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CONTENTS

Ⅰ. 신 ·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01

Ⅱ.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02

Ⅲ.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07

Ⅳ.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 14

Ⅴ.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 15

Ⅵ. 에너지원별 설치유형에 따른 가중치 적용 사례 ····· 20

Ⅶ. Q&A ····· 29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 37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39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법 시행령 별표 ····· 10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121
4.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139
5.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157

Ⅸ. 부록 ····· 219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 221
2.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참여절차 ····· 223
3.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 224
4. RPS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225
5. 지목의 종류 ····· 229

Ⅰ. 신 ·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 신 · 재생에너지 보급

2011년 기준 7,582,846toe를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 총 1차 에너지의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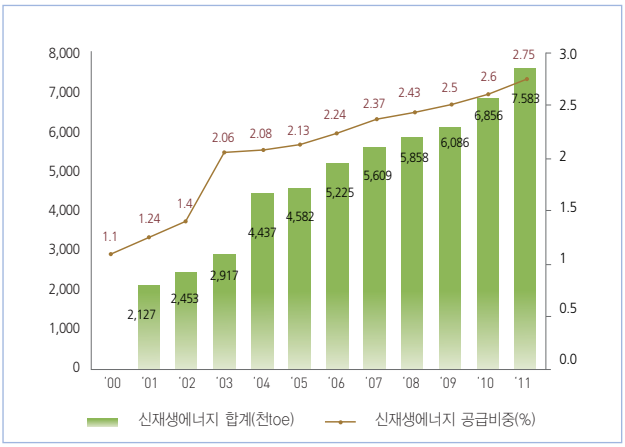

[신 · 재생에너지 공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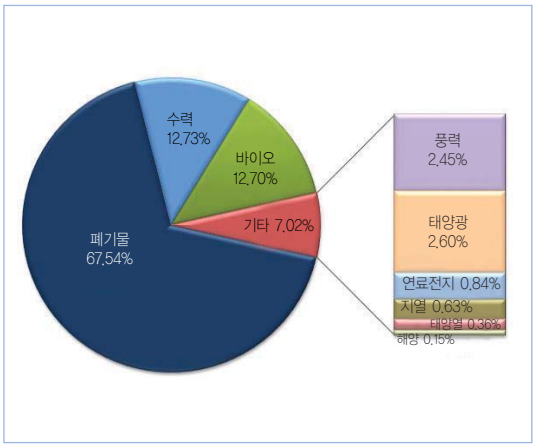

[신 · 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

2. 신 · 재생에너지 발전

2011년 기준 17,345,647MWh를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 총 발전량의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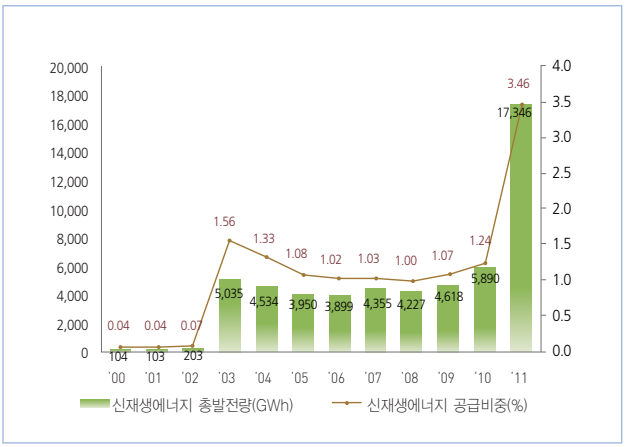

[신 ·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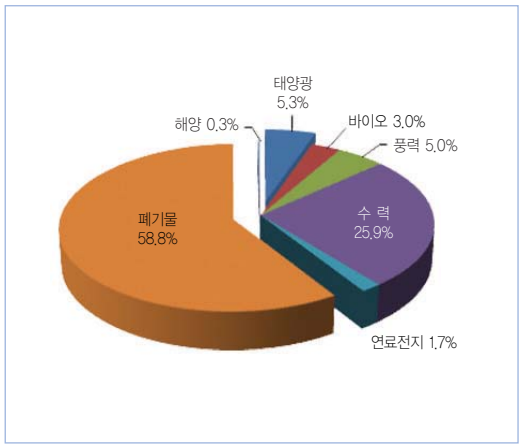

[신 ·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비율]

Ⅱ.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1. RPS 제도 개요

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나. 추진경과

2008.11. 23 RPS제도 입법예고
2009. 4. 15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정, 심의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 · 공고(법률 제10253호)
9.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공고 (대통령령 제22382호)
9.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공고 (지경부령 제149호)
12. 30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0-244호)
12. 30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기관 지정 (지경부 공고 제2010-491호)
2011. 7. 1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1-9호)
12. 2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0-290호)
12. 3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1-16호)
2012. 2. 24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2-5호)
2. 28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공고 (대통령령 제23640호)
5. 2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2-11호)
6. 25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2-134호)
6. 29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 (센터 공고 제2012-16호)

12. 2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2-134호)
1. 4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3-5호)
2013. 1.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공고
(대통령령 제24338호)
3. 1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공고
(지경부 고시 제2013-48호)
3.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3-2호)
3. 1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고(센터 공고 제2013-4호)

2. 공급인증기관

가.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 지정일 : 2010. 12. 30일(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1호)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
  -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나. 한국전력거래소

- 지정일 : 2013. 1. 14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016호)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3.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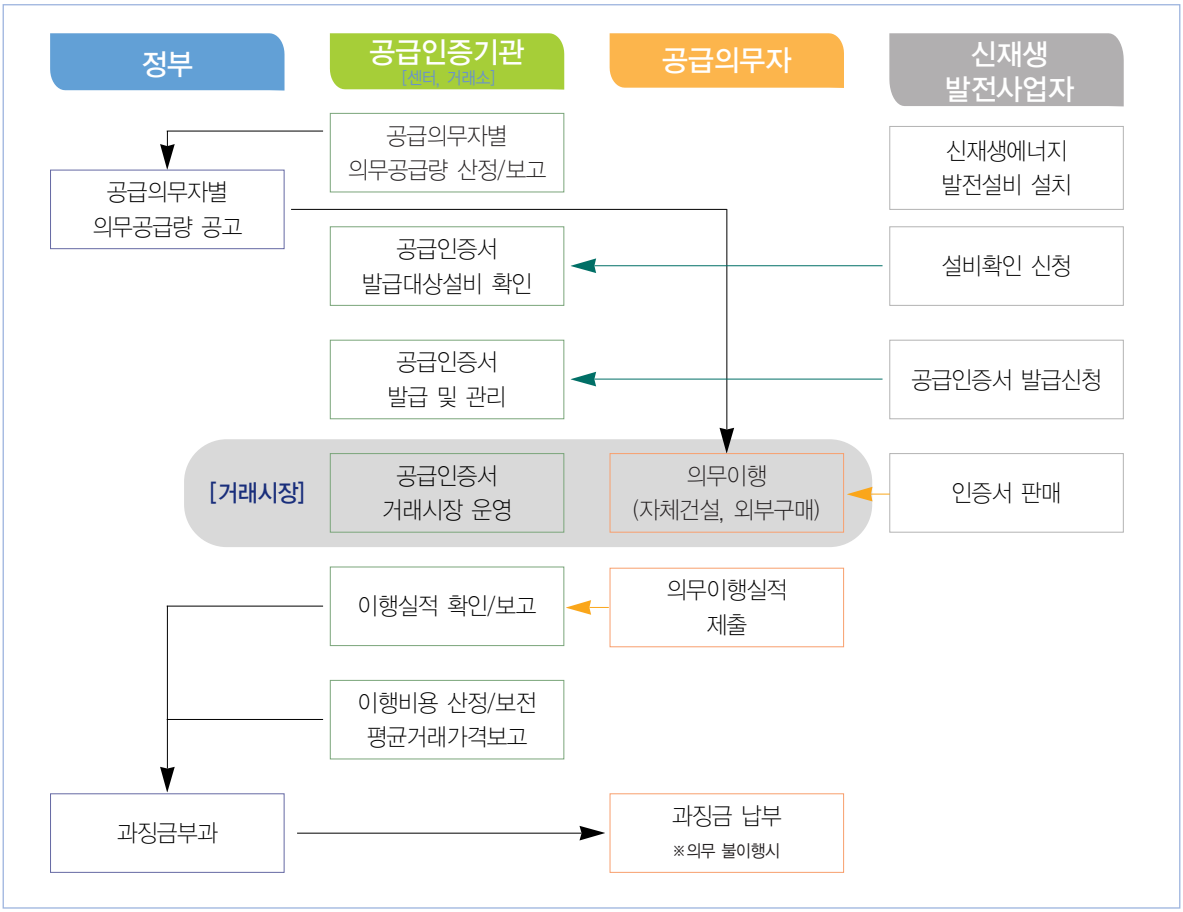

4. 공급의무자 및 의무공급량

가.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나.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 조정의무비율(%) =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기준발전량이 '0' 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시행령 별표3)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

연 도	2012	2013	2014	2015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5G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함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

5. 공급인증서

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 전기사업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단, 자가용전기설비로부터 전환된 경우 제외)

-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 신 · 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
  - 신 · 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신 · 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
  -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

다. 신 · 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공급인증서
가 중 치</th><th colspan="3">대상에너지 및 기준</th></tr>
<tr><th>설치유형</th><th>지목유형</th><th>용량기준</th></tr>
<tr><td rowspan="4">태양광
에너지</td><td>0.7</td><td rowspan="3">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td><td colspan="2">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td></tr>
<tr><td>1.0</td><td rowspan="2">기타 23개 지목</td><td>30kW 초과</td></tr>
<tr><td>1.2</td><td>30kW 이하</td></tr>
<tr><td>1.5</td><td colspan="3">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5">기 타
신재생
에너지</td><td>0.25</td><td colspan="3">IGCC, 부생가스</td></tr>
<tr><td>0.5</td><td colspan="3">폐기물, 매립지가스</td></tr>
<tr><td>1.0</td><td colspan="3">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td></tr>
<tr><td>1.5</td><td colspan="3">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td></tr>
<tr><td>2.0</td><td colspan="3">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td></tr>
</table>

주1) 가중치는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 · 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로 규정
주2)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Ⅲ.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가. 신 · 재생에너지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RPS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고)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설비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설비확인서 발급(기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1개월 소요 가능)

※ 설비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서면조사로 갈음

나.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전국 세무서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2부	산업통상자원부 / 시 · 도지사
③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2부	한국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④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2부	시공기업
⑤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근접촬영 포함 5종 이상)	–
⑥ 단선결선도 2부	시공기업
⑦ 정보제공동의서 2부 (제공서식 이용)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⑧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2부(제공서식 이용)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⑨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2부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www.kepco.co.kr / www.kpx.or.kr)

다. 기타 제출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특수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2부	–
②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2부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③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2부	–

라. 에너지원별 제출서류 및 적용 기준

① 태양광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2부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② 설치도면 2부	시공기업
③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2부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전국 시, 군, 구청 (www.minwon.go.kr)
④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2부 –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 전 지목이 표기되어야 함	전국 시, 군, 구청, 동 주민 센터 (www.minwon.go.kr)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태양전지모듈은 신 ·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 ·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 완료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관계 법령 및 별도 인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건축물의 인정범위

  -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태양전지 모듈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의 2배 면적 내에서만 인정하며, 전체 발전설비 설치면적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이용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별도로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봄
* 부속시설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설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함
*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상부에 존재하여야 함

건축물 외 기존시설물의 인정범위

- "기존시설물" 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 제외)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의 50%미만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지자체장이 승인한 인 · 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없이 상시 무료개방한 면적에 한함(유 · 무료 주차장 혼재시 입출구가 각각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면적 불인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 · 설비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 도로법을 적용받는 자전거이용시설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여 '시설물' 을 이용한 것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자전거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시설물' 을 이용한 것으로 봄
    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설비용량의 50% 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② 전체(발전사업허가 기준) 사업부지의 10%이내 면적에 한함
    ③ 지붕이 있는 구조물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된 용량에 한함

- 공급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상태양광의 인정범위 및 방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로서 다음의 각 호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발전소 설치 부지는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 하천 또는 유지(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제외)이어야 하며, 연중 유수가 있거나 상시 물이 저장되어야 함
*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단, 인버터 및 배전선로는 제외)는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부력체의 옆면 또는 하부에 고정된 지지대가 없어야 함
*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는 기존 댐 및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저수지의 주용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부력 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기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비고 관련)

- ‘전원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양수발전 사업구역에 한함
- ‘폐광부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완료를 확인한 면적에 한함
- ‘채석단지’는「산지관리법」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면적에 한함

② 바이오 · 폐기물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운전계획서 2부	–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2부	시공기업
③ 모니터링 계획서(모니터링 설비 등) 2부	–
④ 신 · 재생연료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부	국가공인기관
⑤ 연료원 출처, 종류, 조달계획 (연료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2부	연료공급처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행령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1에 따름
  - 투입 연료 중 바이오 · 폐기물에너지의 열량비율 기준으로 검토하고, 바이오 · 폐기물 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신 · 재생에너지가 아닌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바이오 · 폐기물에너지의 열량 비율만 적용하며,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 · 폐기물에너지에서 제외
  -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목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제외 대상을 재검토

- 매립지가스
  -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가스

- 목질계 바이오매스
  - 광합성을 통해 자라는 식물군으로부터 얻어지는 목질계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RDF 전소발전
  -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시킨 고형연료(RDF)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전소발전 : 해당 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하여 전체열량의 10% 이내 혼소를 인정)

- 폐기물 가스화 발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합성가스(Syngas)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며, 열분해에 의한 가스화 기술에 한하여 적용

③ 풍력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2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2부 – 해상풍력의 경우,「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	시공기업
③ 신 · 재생에너지 인증서 사본 2부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 ·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해상풍력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

  *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육상풍력으로 봄

  - 연계거리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

④ 수력 · 조력 · 연료전지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발전설비 사양서 2부	시공기업
② 설치도면 2부	시공기업
③ 신 · 재생에너지 인증서 사본 2부 – 연료전지,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수력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단, 양수발전 설비 제외)

- 조력
  - 해양의 조석 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신 ·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⑤ 신 · 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신 · 재생에너지건물인증서 사본	인증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② 계량시스템 관련 자료 – 계량기기 및 방법, 기록관리방법 – 자가용 발전설비에 한함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 · 재생에너지설비로서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설비

- 복수의 신 ·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에너지원 가중치 기준을 각각 적용

Ⅳ.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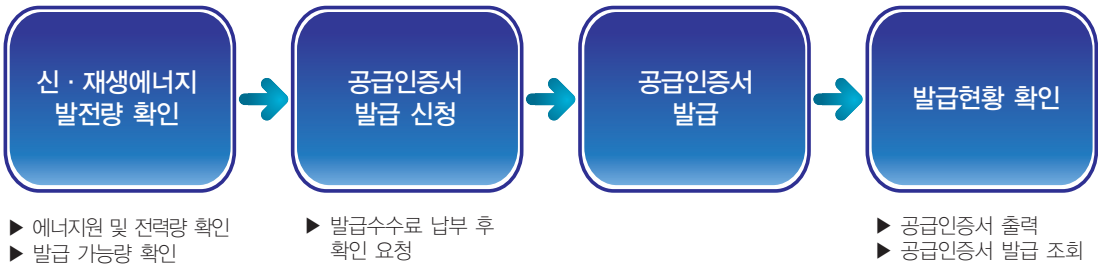

2. 공급인증서 발급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온라인 신청)
-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
  - 신청기간 개시월 초일부터 신청기간 종료월 말일까지 전력공급량 기준
  - 공급인증서 발급 후 소수점 이하 분은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
  -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발급 완료(단, 100kW 미만 설비는 발급수수료 제외)

3. 공급인증서 관리

- RPS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내용 확인 가능
  -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 신 ·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
  - 공급인증서 발급 현황
  - 공급인증서 보유 현황

Ⅴ.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1. 개 요

- 태양광 산업의 육성 및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 선정 절차

2.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자격

- 선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설비는 선정참여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득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 · 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 총괄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 가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기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선정 참여 제출서류

필수 서류

필수 서류	발급처 및 양식
① 사업내역서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	산업통상자원부 / 시 · 도지사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전국 각지 등기소 (www.iros.go.kr)
⑤ 토지대장 1부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전국 시, 군, 구청, 동 주민센터 (www.minwon.go.kr)
⑥ 태양광발전 배치도면(평면도) 사본 1부	시공업체

선택 서류

선택서류	발급처 및 양식
① 건축물 대장 1부 –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전국 시, 군, 구청 (www.minwon.go.kr)
②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www.minwon.go.kr)
③ 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 · 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④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⑤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⑥ 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사본 1부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 선택 서류
  -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써 5년 전 지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참여자 평가 기준

-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을 제시한 사업자 및 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판매사업자 선정기준 》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판매가격	{(상한가격-판매가격)/상한가격)} × 70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70
사업내역서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 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 계			100

- 사업내역서 평가
  - 대상 :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서
  - 세부 내용

(a)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 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b)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c)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기부각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5.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 공급인증기관(신 · 재생에너지센터)은 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 단, 동일점수일 경우 다음에 따라 순위 설정
  ① 참여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6.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신청 시점 :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 전량 계약
- 계약 기간 : 12년 이상

7.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무효화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하반기 선정인 경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선정참여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 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신 · 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8.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규칙 제30조제1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일 경우는 예외)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하반기 선정인 경우는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참여제한 적용
- 참여제한 적용범위
  -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

Ⅵ. 에너지원별 설치유형에 따른 가중치 적용 사례

1. 태양광

가. 건축물 활용

- 가 중 치 : 1.5
- 필요조건
  -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될 것
  -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관련 법령 및 별도 인 · 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할 것

건축물의 중정에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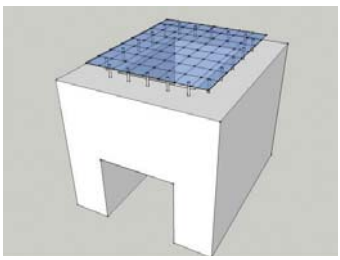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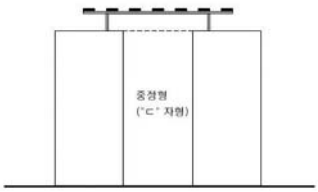

건축물의 외벽 혹은 난간에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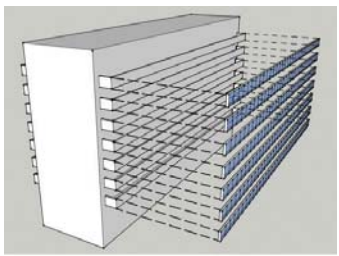

※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봄

건축물의 옥상조형물(구조물)에 설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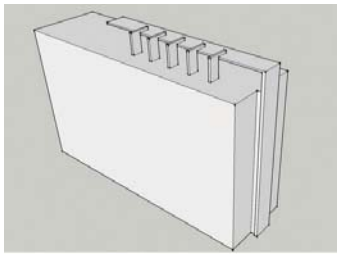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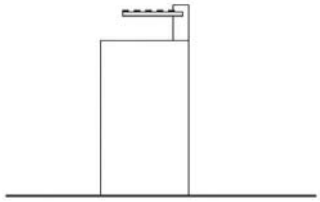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다리 혹은 연결통로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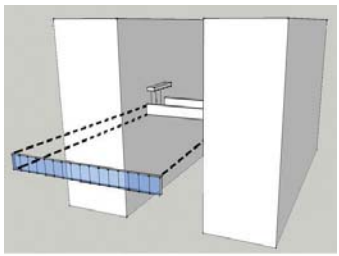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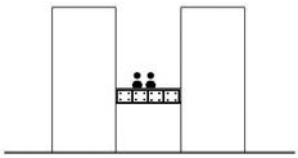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케노피 등으로 구성한 경우

※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물을 이용한 경우

- 태양전지 모듈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의 2배 면적 내 인정
- 전체 발전설비 설치면적 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이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
-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차장 면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나. 기존시설물 활용

- 가 중 치 : 1.5
- 필요조건
  - 해당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기반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할 것
  - 시설물 활용 서류 증빙할 것

도로의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

육교 및 다리 위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지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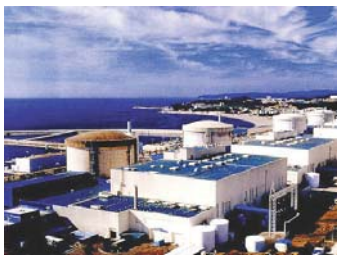

※ 단, 시설물 활용이 아닌 지목 위에 설치할 경우 해당 지목의 가중치 적용

철도 역사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될 것
- 건축물의 용도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각종 인 · 허가 등에서 관련 개별법을 준수

※ 철도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

-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
- 기반시설 중 철도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
- 시설물 활용 서류 증빙할 것

지목이 주차장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 필요조건

- 해당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 해당 지목이 '주차장' 이여야 할 것
- 주차장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으면, 해당 지목의 가중치 적용

부설주차장이 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설비용량의 50% 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지자체장이 승인한 인 · 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없이 상시 무료개방한 면적에 한함(유 · 무료 주차장 혼재시 입출구가 각각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면적 불인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 · 설비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함
-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참고 》 주차장 적용기준

2. 바이오 · 폐기물

가. 바이오 에너지

매립지가스 및 일반 바이오에너지

- 가 중 치 : 0.5 (매립지가스)
  1.0 (일반 바이오에너지, 해당 열량비율에 대해서만 가중치 적용)
- 필요조건

- 바이오에너지 비율이 산정 되어야 함
- 바이오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를 바이오 에너지에서 제외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가 중 치 : 1.5
- 필요조건

- 전소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하는 것
-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 인정

나. 폐기물 에너지

부생가스 및 일반폐기물

- 가중치 : 0.25 (부생가스)
  0.5 (일반 폐기물, 혼소일 경우 폐기물 열량 비율에 한함)

RDF 전소발전 및 폐기물 가스화

- 가 중 치 : 1.0
- 필요조건

- RDF 전소발전 ⇨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시킨 고형연료(RDF)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발전' 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 이내 혼소 인정)
- 폐기물 가스화 발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합성가스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열분해에 의한 가스화 기술에 한하여 적용

3. 풍력

가. 육상풍력

방파제, 매립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 가 중 치 : 1.0 (육상풍력 가중치 적용)
- 필요조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육상풍력
  -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나. 해상풍력

해상 풍력과 육상풍력을 여러 장소에 함께 설치한 경우

- 가 중 치 : 1.5 (연계거리 5km이하), 2.0 (연계거리 5km 초과)
- 필요조건
  - 다수의 풍력 설비 중 육상풍력이 포함되면 개별 가중치 적용
  - 해상풍력만 설치되어 있으면 연계거리에 따라 해당 가중치 적용

4. 기타

가. 복수설비

복수의 가중치 신 ·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가 중 치 : 개별 가중치 각각 적용
- 필요조건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력공급량 계량설비가 각각 설치 되어있어야 함
- 공급인증서의 가중치가 가중 평균되어 발급되는 것은 아님

나. 신 · 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 · 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 가 중 치 : 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 ·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적용
- 필요조건

- 건축물인증으로 공급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연료전지가 있음
- 건축물인증 또한 에너지원별 가중치가 적용됨(단, 복수의 에너지원이 설치된 경우, 개별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되 계량설비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함)

Ⅶ. Q&A

1. RPS 제도 일반

Q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을 보면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2022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2022년으로 종료되는 것인가요?

A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 전력생산량의 10%가 의무공급량으로 부과됩니다. 즉, 2022년 이후에도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4〉를 보면 태양에너지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에너지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이후로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A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1,577GWh의 태양에너지 별도 의무공급량이 부과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는 신규로 태양에너지 별도 의무공급량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상업운전을 개시한 다음연도부터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며,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부과 받게 됩니다.

Q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년 1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하고 있으며, 해당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자가용 설비의 경우,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이후에 사용전검사를 합격한다면 RPS 대상설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자가용 설비를 사업용 설비로 전환하여 2010년 9월 17일이후에 사용전검사에 합격하더라도 RPS 대상설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만약 발전차액지원을 포기하고, RPS제도로 전환한다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차액중단확인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RPS제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됩니다.

Q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가중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A 국가소유 공급인증서(발전차액지원분) 발급시에도 고시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Q RPS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또, 이때 발생하는 발급수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A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Q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무엇인가요?

A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력판매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SMP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신 ·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통하여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RPS 대상설비를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위의 두 가지 수입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한 수입은 개별 발전사업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력판매대금(SMP)'과 '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을 합한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발전량(kWh)=설비용량(kW)×가동률×24(시간/일)×30(일/월)》이며, 《전력판매대금=발전량×SMP》이고, 《공급인증서 판매대금=발전량×가중치×공급인증서 가격》로 계산하면 됩니다.고정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률은 14%~15%(3.5시간 전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전소 위치와 설비특성에 따라 가동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은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발생되므로 공급인증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중치가 1.5라면 공급인증서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A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치가 0.7인 5대 지목의 경우, 실제 전력 공급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며, 가중치가 1.5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 공급량의 150%에 해당하는 양의 공급인증서 발급됩니다. 따라서 가중치가 1.5인 경우, 전력 공급량의 1.5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를 더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공급인증서 가격에 1.5배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신 ·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설치의무화 대상 기관인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 설비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설치의무화 대상기관이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 RPS 대상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설치의무화 대상사업과 별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한 발전설비라면 대상설비로 인정되어 공급인증서가 발급되지만, 설치의무화 대상과 동일한 발전설비일 경우에는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 발전소 설비를 증설했을 경우 추가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급인증기관에 발급 대상설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 용량 증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2.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가. 가중치 일반

Q 가중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가중치는 환경훼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 ·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또는 계약시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12년 동안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변경은 가능한가요? 또한, 향후에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변경 또는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가중치 등이 변경되지 않으며, 가중치가 변경되더라도 소급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2개 이상의 발전원이 하나의 발전소로 등록할 경우 가중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 · 재생에너지원별로 각각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나. 태양광 가중치

Q 태양광의 경우 지목별 가중치 적용시 지목 판단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전 지목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Q 5개 지목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가중치 1.5가 적용되나요?

A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로 가중치 적용 가능 합니다.

Q 폐교나 구제역 지역의 축사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중치 1.5가 적용되나요?

A 건물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목별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현재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교가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교육관련 등 사업으로 허가되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면 가중치 1.5 적용 가능합니다.)

Q 현재 지목이 주차장이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5년 전 지목이 5개 지목일 경우 가중치는 얼마인가요?

A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치유형이 지목유형보다 우선이므로 지목과 상관없이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Q 건축면적의 2배 안에 5개 지목이 있어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건축물이 속한 부지 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모듈 면적기준으로 건축면적 2배 면적 내에서만 1.5 가중치가 인정되며, 설치면적 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야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속시설물이 건축물과 동일지번이어야 합니다.

Q 매립지 등 5년 전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지목을 적용하나요?

A 해당 토지의 최초 지목이 적용됩니다.

Q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가능한가요?

A 대상설비 설비확인 신청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다면,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선정참여 서류 제출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태양광을 상 · 하수도 처리시설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상하수도처리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지목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Q 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하는 수면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고 운영규칙의 해당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중치가 1.5이며, 이 외의 경우 5년전 지목이 적용됩니다.

Q 5개 지목 외에 기타 23개 지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목의 종류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록5'에서 관련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신 · 재생에너지

Q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으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혼소 발전의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며, 공급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혼소발전의 경우 에너지원의 해당 열량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의 비율 산정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증빙서류(연료투입량, 발열량, 발전량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가중치는 얼마이며, 해당 건물의 전력량은 어떻게 계량하나요? 또한, 건축물인증 등급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 되는 건가요?

A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공급된 전력량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인증 등급에 따라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Q 공급인증서 유효기간 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공급인증서는 폐기됩니다.

Q 공급인증서의 발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급인증서는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된 전력량(소내소비전력 제외)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Q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12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발급이 가능하다면 공급인증서는 어떻게 거래할 수 있나요?

A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공급인증서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Q 대상설비 설비확인 이전의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단, 설비확인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Q RPS 시범사업에서는 정부 무상지원금 비율이 30%가 넘으면 참여를 못 했는데 RPS는 정부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RPS제도에서는 국가에서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국가 지원비율만큼은 국가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4.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Q 판매사업자 선정시기와 선정 의뢰물량은 언제 알 수 있나요?

A 공급의무자는 매년 2회(2월, 8월) 공급인증기관에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의뢰가 완료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선정물량 포함)를 합니다.

Q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A 판매사업자로 선정 되지 않아도 RPS 대상설비 확인된 후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Q 판매사업자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취소에 따른 처분을 적용 받나요?

A 판매사업자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선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Q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시 부부간에도 건축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판매사업자 선정시 건물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시설물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선정참여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로 해야 하나요?

A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토지대장은 5년 전 지목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Q 설비내역 중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전검사 이전에 신 · 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 인터넷으로 선정참여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차후에 직접 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가요?

A 선정 이후에 설비확인시 사정에 따라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Ⅶ. 관련 법령·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시행령·시행규칙 / 39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 10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121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139
5.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15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1997. 12. 13 법률 제 5446호	제정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8호	제정 2003. 1. 3 산업자원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2002. 3. 25 법률 제 6672호	일부개정 2002. 9. 26 대통령령 제17748호	일부개정 2005. 2. 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03. 5. 27 법률 제 6885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부개정 2005. 10. 13 산업자원부령 제305호
전문개정 2004. 12. 31 법률 제 7284호	일부개정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4호	일부개정 2006. 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 7998호	전부개정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일부개정 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 1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10. 9. 24 지식경제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제 8899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 9233호	일부개정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7호	
일부개정 2009. 1. 30 법률 제 9372호	일부개정 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7호	
일부개정 2009. 5. 21 법률 제 9680호	일부개정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1호	
일부개정 2010. 1. 13 법률 제 9931호	일부개정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일부개정 2010. 4. 12 법률 제10253호	일부개정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17호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	
	일부개정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0호	
	일부개정 2013. 1. 28 대통령령 제24338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목 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 11	제1조(목적) ····· 11	제1조(목적) ····· 11
제2조(정의) ····· 11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11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 11
제3조 삭제 ····· 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1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13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 14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15	제3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15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16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16	
	제5조(심의회의 운영) ····· 17	
	제6조(간사 등) ····· 17	
	제7조(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 17	
	제8조(수당 등) ····· 17	
	제9조(운영세칙) ····· 18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 계획의 경미한 변경) ····· 1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 18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9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19	
제11조(사업의 실시) ····· 20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 20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 20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 21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21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 21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22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 22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23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 24	제18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 24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 25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 26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26	제18조의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 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27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28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 28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9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 30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 30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 30
	제18조의8(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 31	
	제18조의9(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 ····· 31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 32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 32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 33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 33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34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 3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 34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 36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 36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 36	제3조(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 36
	제20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36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 36
		제5조(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 ····· 37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 37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 3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 39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 39		제9조(설비인증의 표지) ····· 39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 40	제21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 40	
제16조(수수료) ····· 41		제10조(수수료) ····· 41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41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 41	
제18조(지원 중단 등) ····· 42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 42
제19조(재정 신청) ····· 43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44	제23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 44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 44	제2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44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44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 45	제25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기준 등) ····· 45	
	제25조의2(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 등) ····· 45	
제23조 삭제 ····· 46	제26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4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청문) ····· 47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 47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 47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 48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48		
제27조(보급사업) ····· 49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 49	
	제28조 삭제 ····· 50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50		제15조(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 절차 등) ····· 50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 52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 52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 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 52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 53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 53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53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 55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55	제18조 삭제 ····· 54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56		
제34조(벌칙) ····· 56		
제35조(과태료) ····· 5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57	
부칙 ····· 59	부칙 ····· 59	부칙 ····· 5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9.17]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 삭제 <2010.4.12>		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3.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전문개정 2010.9.17]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4.12]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7조(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7] **제9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기관에 건축물인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18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건축물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건축물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건축물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건축물인증의 절차,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에 건축물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건축물인증기관은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 2.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건축물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8조의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7]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외한다)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7]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 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7]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	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③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8조의8(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8조의9(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본조신설 2010.9.17]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2013.3.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거래시장의 개설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0.4.12]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본조신설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20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조(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 현황 등 인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9.24]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9.17]]	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5조(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 설비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주소 4. 지정일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 7. 업무 개시일 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비인증기관은 설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맞는지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9.24]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그 성능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9조(설비인증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9.24]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제16조(수수료) ① 건축물인증기관, 설비인증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은 건축물인증, 설비인증 또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수수료, 설비인증 수수료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법률 제10253호(2010.4.12)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	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전문개정 2010.9.17]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9조(재정 신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송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	**제23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9.17] **제2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10.9.17]	다. 1. 대상 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	**제25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신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25조의2(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우수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술인력 2. 시공 실적 3. 기업의 신용 상태 4. 품질 및 사후관리 실적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조신설 2010.9.17] **제26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공용화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 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 삭제 <2010.4.12>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증명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6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 [전문개정 2010.9.24]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28조** 삭제 <2010.9.17>	**제15조(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4.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5.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 6.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7.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8.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0.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1.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3.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8조** 삭제 <2010.9.2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 제20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건축물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건축물인증기관의 임직원 2.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성능검사기관의 임직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0.4.12] **제34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2.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9.1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칙 <법률 제7284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00305호, 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④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6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너지"를 각각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998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49호, 201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부터 <760>까지 생략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99호, 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233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72호, 2009.1.30> (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8.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680호, 2009.5.21> (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7호, 2008.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4.21>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253호,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4.13> (에너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82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적용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제18조의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0호, 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8호, 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항, 제12조의6제1항·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0.9.17>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 에너지로 본다.

[별표 2] <개정 2010.9.17>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별표 3] <개정 2010.9.17>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 율(%)
2012	2.0
2013	2.5
2014	3.0
2015	3.5
2016	4.0
2017	5.0
2018	6.0
2019	7.0
2020	8.0
2021	9.0
2022 이후	10.0

[별표 4] <개정 2013.1.28>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276
2013년	723
2014년	1,156
2015년 이후	1,577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2,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4,000
2.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3,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5,000

[별표 6] <신설 2010.9.17>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2호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3호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7]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풍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7. 해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9. 지열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비 고

1. 자본금

가.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재생에너지전문분야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의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8] <신설 2010.9.17>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1,000 만원	1,000 만원
나.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않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1,000 만원	1,000 만원
다.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않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500 만원	1,000 만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별표 1] <개정 2010.9.24>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2] <개정 2010.9.24>

설비인증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심사기준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의 적정성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2. 설비 심사기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결과서에 따른다)
   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의 적합성
   나. 설비의 효율성
   다. 설비의 내구성
3. 비 고

   설비인증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비인증 심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0.9.24>

설비인증표지(제9조 관련)

1. 색상

※ 설비인증표지의 색상은 형태와 더불어 일관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러데이션(gradation)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크기

설비인증표지는 아래에 제시된 그리드(grid)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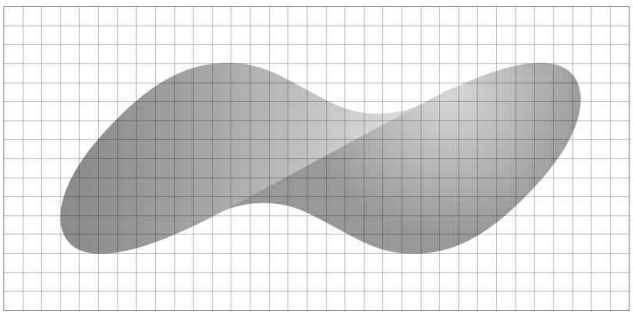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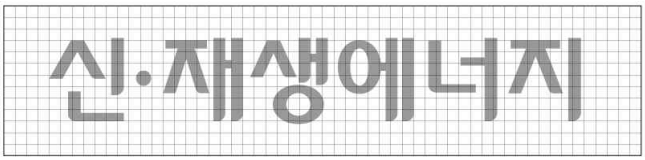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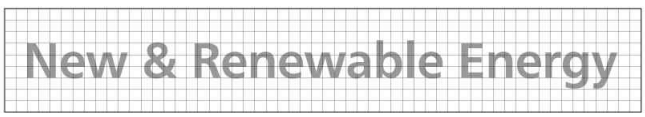

[별표 4] <개정 2013.3.23>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인증 수수료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거용 건물>

전용면적	수수료(원)
10,000㎡ 미만	3,900,000
10,000㎡ ~ 20,000㎡	5,300,000
20,000㎡ ~ 30,000㎡	6,600,000
30,000㎡ ~ 40,000㎡	7,900,000
40,000㎡ ~ 60,000㎡	9,200,000
60,000㎡ ~ 80,000㎡	10,600,000
80,000㎡ ~ 120,000㎡	11,900,000
120,000㎡ 초과	13,200,000

※ 부가가치세 10% 별도

<비주거용 건물>

연면적	수수료(원)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7,900,000
10,000㎡ ~ 15,000㎡	9,900,000
15,000㎡ ~ 20,000㎡	11,900,000
20,000㎡ ~ 30,000㎡	13,900,000
30,000㎡ ~ 40,000㎡	15,900,000
40,000㎡ ~ 60,000㎡	17,800,000
60,000㎡ 초과	19,800,000

※ 부가가치세 10% 별도

2. 설비인증 수수료

가. 산정방법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항 목	산 정 내 역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勞賃)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고, 고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각종 경비	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기술료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설비인증 업무규정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 수수료를 가목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후 이를 설비인증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성능검사 수수료

가. 산정방법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하려면 설비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항 목	산 정 내 역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고, 고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검사장비 운 영 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재료비 및 치구(治具) 제작비 등 추가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기술료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성능검사 업무규정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가목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후 이를 성능검사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제 호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지정서 작성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210㎜×297㎜(백상지 80g/㎡)

제 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주소: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설치하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대상 에너지원	국적(소속 국가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1부	신고인 첨부서류는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신 고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210㎜×297㎜(백상지 80g/㎡)

(앞 쪽)

제 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1. 신·재생에너지원:
2. 법 인 명(업 체 명):
3. 대 표 자:
4. 사무소 소재지:
5. 자 본 금: 억원
6. 기 술 인 력: 명
7. 등록 공사업명:
8. 신고 연월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일련번호	변경 연월일	변경 항목	변경된 내용	확 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명(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려 신청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신고 여부 확인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기타	설립일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기술현황	기술명칭
	기술구분 [ ]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천기술 보유기관:)
신청내용	신청분야 [ ] 시험제품 제작 [ ] 설비투자 [ ]교육 및 홍보 [ ] 기타
	총투자자금 융자: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체 : 백만원, 합계: 백만원
	사업기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포함합니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지원여부 결정	→	결 재	→	결과 회신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297㎜(백상지 80g/㎡)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3. 1.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말한다.

4.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5.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9.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0.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1.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단, 자가용전기설비로부터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

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

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인증서의 구매) ① 영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16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2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5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

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3조제1항제2호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7제2항및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24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290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34호, 2012.6.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8호, 201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업무는 제3조제10호, 제12조,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26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한다.

② 2013년 이후의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업무는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급 또는 거래된 경우와 2012년 이행연기량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하여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 조정의무비율(%)

$$= \text{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frac{\text{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text{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RPG_n^{\text{한수원}} = NG_{n-1} \times (1-\alpha_n) + G_{n-1}^{\text{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RPG_n^i = G_{n-1}^i + \left(\frac{G_{n-1}^i}{\Sigma G_{n-1}^{5gencos}} \times NG_{n-1} \times \alpha_n \right)$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RPG_n^j = G_{n-1}^j$

주1) RPG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NG : 원자력 발전량

주3) G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α_n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n) 경감률

주5) n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n-1$: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5gencos$: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i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j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n) 경감률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경감률(α_n)	5%	15%	25%	35%	45%	50%

<별표 2>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GWh)

= 영 별표4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GWh)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구 분		대상자		그룹간 분담율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그룹 I	설비용량 5,000MW이상	6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frac{RPG_I}{RPG_T}$	$\frac{RPG_I}{RPG_T} \times \frac{1}{n_I}$
그룹 II	설비용량 5,000MW미만	7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frac{RPG_{II}}{RPG_T}$	$\frac{RPG_{II}}{RPG_T} \times \frac{1}{n_{II}}$

주1) RPG_T : 공급의무자 전체 기준발전량의 합

RPG_I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RPG_{II}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n_I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n_{II}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기준발전량은 직전 3년(n-1, n-2, n-3) 평균 기준발전량으로 한다.

주2) 그룹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 I에 할당한다.

주3) 그룹내 공급의무자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 내 최대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주4)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공급인증서
가중치</th><th colspan="3">대상에너지 및 기준</th></tr>
<tr><th>설치유형</th><th>지목유형</th><th>용량기준</th></tr>
<tr><td rowspan="4">태양광에너지</td><td>0.7</td><td rowspan="3">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td><td colspan="2">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td></tr>
<tr><td>1.0</td><td rowspan="2">기타 23개 지목</td><td>30kW 초과</td></tr>
<tr><td>1.2</td><td>30kW 이하</td></tr>
<tr><td>1.5</td><td colspan="3">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5">기타
신・재생에너지</td><td>0.25</td><td colspan="3">IGCC, 부생가스</td></tr>
<tr><td>0.5</td><td colspan="3">폐기물, 매립지가스</td></tr>
<tr><td>1.0</td><td colspan="3">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td></tr>
<tr><td>1.5</td><td colspan="3">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td></tr>
<tr><td>2.0</td><td colspan="3">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td></tr>
</table>

비고

1. "건축물"이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지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폐광산(廢鑛山)으로서 「광업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한 지역의 폐광(廢鑛)부지
   ③「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라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지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⑤「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수도시설
   ⑥「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동법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하수도처리시설
   ⑦「하천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
   ⑧「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부지
   ⑨「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도로부지 또는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을 폐지한 폐도부지
4.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유지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②「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6.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7.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당 연계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공급인증서 발급량

○ 공급인증서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α')

○ 별도 가중치(α')

2009년 개시분	2010년 개시분	2011년 개시분
α' = 1.3	α' = 1.2	α' = 1.1

주1) 개시연도는 해당 발전설비의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월부터 만12년간 적용하며, 12년 경과후에는 별도 가중치(α')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3)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너지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월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비태양광인증서×중간적용가격+$\sum_{i=\text{개시년도}}^{\min(i+11,\text{이행년도})}$ 태양광인증서$_i$×태양광중간적용가격$_i$

주1) 태양광인증서i : i년도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태양광 공급인증서
- ·자체건설분은 상업운전개시년도를 i년도로 본다.
- ·현물시장 거래분은 이행년도를 i년도로 본다.
* 계약 및 상업운전 개시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태양광중간적용가격i : i년도 태양광 중간적용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공급인증서 중간적용가격 산정기준

1. 비태양광과 태양광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2.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중간적용가격은 전년도 기준가격과 해당년도 전월까지의 평균거래가격 중 작은 값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비태양광인증서×기준가격+$\sum_{i=\text{개시년도}}^{\min(i+11,\text{이행년도})}$ 태양광인증서$_i$×태양광기준가격$_i$ − ∑월간정산금 − 전년도과부족액

주1) 태양광인증서$_i$: i년도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태양광 공급인증서
- 자체건설분은 상업운전개시년도를 i년도로 본다.
- 현물시장 거래분은 이행년도를 i년도로 본다.
* 계약 및 상업운전 개시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태양광기준가격$_i$: i년도 태양광 기준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비태양광과 태양광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2.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기준가격은 공급인증서 수량 또는 설비용량과 해당가격을 가중평균하여 각각 산정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4.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해당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②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직전 3개 연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적
④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제　　정 2011. 7.18
개　　정 2013. 3.18(7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및 제12조의9,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의무이행비용 보전관련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5.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법 제12조의9 및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8.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설비를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3에 따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1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11. “소내소비전력”이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말한다.
12. “상업운전개시일”이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고한 상업운전개시일을 말한다.
13.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이란 기준발전량 산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포함한 공급의무자별 전체 발전량을 말한다.
14.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한다)란 지침 제10조에 따른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별도 선정한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인증기관의 책무) 각 공급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9 및 지침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거래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활용하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유효기간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공급인증기관간 정보공유) 각 공급인증기관은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성 및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정보제공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관련 현황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폐기 현황
3. 판매사업자 선정 현황
4.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신고 현황
5. 현물시장 매매체결 현황 및 소유권 이전 현황
6.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실적
7. 의무이행비용 보전 현황
8. 기타 각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관리시스템 등록)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제3호 이외의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리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급의무자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3.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보고

제8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 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매년 1월 20일까지 직전 3개년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출된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을 기초로 하여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지침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각각 산정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한다.

③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별도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지침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9조(공급의무자 변경 등록) 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공급의무자의 발전설비 보유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고된 공급의무자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3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

제10조(설비확인 이행)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설비확인 신청) ①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 보유자로서 발전차액지원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선행제도 설비확인 신청의 면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설비확인 신청을 면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RPA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설비확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상설비에 대한 설비확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설비확인 절차)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설비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기술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기술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1항 규정기간으로부터 추가 1개월이내에 설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처리일정 및 추가소요일수 등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지침 별표 3에 의한 가중치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별표 1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설비 설치유형 및 설치용량과 신청내용과의 일치여부

④ 설비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설비의 등록 및 관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대상설비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확인서 발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설

비 확인서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비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설비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비확인서 변경 발급이 완료된 설비에 대해 월단위로 설비확인신청서, 설비확인서, 설비변경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15조(대상설비의 변경) ① 대상설비를 보유한 자는 소유주, 주소지, 사양 등 설비확인 및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설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의 설비확인 절차에 준하여 변경신청내용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설비 확인서를 변경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비 사양 변경 등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설비 변경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대상설비 등록말소) ① 대상설비를 보유한 자가 발전사업을 폐업하거나 대상설비를 폐지한 경우 폐업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상설비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설비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설비의 등록을 관리시스템에서 말소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설비로부터 1년 이상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설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7조(대상설비의 사후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대상설비에 대하여 설비확

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제18조(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한 전력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한 전력량에 대해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은 월단위로 하며 신청기간 개시월 초일부터 신청기간 종료월 말일까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발급수수료 납부는 발전사업자 명의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발급수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 연료의 사용량 및 발열량 등에 대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1.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2.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인증서로서,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3. 100kW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③ 공급인증서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설비확인 신청이 이루어진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일별 전력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단위의 전력공급량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 이후의 전력공급량을 계산한다.

④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발전설비 또는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설비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⑤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받은 발전사업자

는 발전차액지원중단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기간에서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의 '공급된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의 소내소비전력은 별표2에 따른다.

⑦ 공급인증서는 "REC" 단위로 발급하며, 공급인증서 발급시 소수점 이하는 자동 이월하여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 처리한다.

⑧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인증서 발급내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월단위 발급실적 통계를 다음달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21조(발급수수료) ①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지침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발급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산출된 수수료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발급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동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자료제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력 공급량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 공급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에너지원별 전력거래실적
2. 지침 제13조제1항제7호에 관한 자료

②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해당 공급인증서를 매월 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23조(공급인증서의 폐기 등) ①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급인증서는 유효기간 다음날 자동 폐기되고,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공급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 최종 확인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최종정산 완료확인 후 즉시 폐기 처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폐기대상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사전공고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며, 해당 폐기정보를 폐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공급인증서 해당량만큼의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공급인증서 대상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발전연료의 혼소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전력공급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5.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발전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폐기할 때는 관련 사실의 확인일 기준으로 해당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폐기한다. 단, 공급인증서 폐기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신규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발급일 순서대로 기준량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하여 폐기한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급인증서의 법적 효력) 공급인증서의 소지가 공급인증서에 관한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공급인증서의 관리 및 폐기 등은 관리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25조(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정보)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정보를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신고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전체(단, 가격관련 정보는 제외) : 다음주 수요일
2.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매매체결 정보(단, 가격관련 정보는 제외) : 시장 개설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3.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정보 : 다음달 5일

제5장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제26조(판매사업자 선정의뢰) ①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공급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지침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후 선정의뢰 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예정일 7일전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판매사업자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의뢰가 완료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및 선정기한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산정하며, 육지와 제주지역에 대하여 각각 산정하여 선정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지역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④ 선정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⑤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선정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하나의 선정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사업자의 선정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S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5.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선정참여자는 제출완료한 선정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판매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선정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선정참여서 평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계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량평가점수가 선정용량의 2배수 이내인 선정참여서에 대하여 사업내역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 중 사업내역서 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공급의무자 등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판매가격이 낮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3.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제29조(판매사업자 선정 및 배분)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8조에 의한 평가 종료 후 제28조제4항의 순번에 의하여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우선하여 배분한다. 단,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의무공급량이 많은 순서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시 판매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한다. 이때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사업자의 배분과정에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단, 선정용량과 선정의뢰 용량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공급의무자에게도 배분되지 못하게 될 시에는 가장 많은 잔여용량이 남아있는 공급의무자에게 잔여용량만큼을 배분한다.

④ 판매사업자 선정을 포기한 경우 공급의무자의 추가 배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기한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결과 순번대로 판매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배분한다.

⑤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다.

⑦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별 판매사업자 선정결과를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30조(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①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단가는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선정참여서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공급의무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사업을 양수한 발전사업자와 남은 계약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1.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하반기 선정인 경우는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공급의무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간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선정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⑥ 공급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무효화된 계약내용을 계약무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참여제한) ① 다음 사항중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3호의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30조제1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0조제5항제1호의 경우
3.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된 판매사업자가 제30조제5항제1호의 후단 규정과 같은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는 참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공급의무 이행 확인 및 보고

제32조(의무이행 실적 통보) ① 공급의무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신청한 공급의무자는 제1항의 의한 통보내용에 해당 공급의무 이행연기 신청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가 통보한 이행연기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제33조(의무이행 실적 확인)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의무공급량 이행분 및 연기분을 감안하여 의무공급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별 공급의무자에게 통보한다.

②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지침 제10조제1항의 이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침 별표2의 그룹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이 존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 발급년도에 그룹I 내에서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지침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생가스 발전소의 경우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이 존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최초 설립시 지분을 소유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 확인시 해당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양 이내에서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지침 별표 3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 확인시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필요시 공급의무자에게 미이행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의무공급 이행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별도의무공급량
2. 이행분(자체조달/외부조달), 이행연기분, 미이행분 및 미이행사유
3. 미이행분에 대한 검토결과

⑦ 전력거래소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전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거래량, 평균거래가격
2. 기타 과징금산정과 관련한 거래시장 운영 정보

제7장 정보공개

제34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각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 공급인증기관이 취득, 생성, 가공한 정보를 공급의무자 및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35조(정보의 종류 및 보관기간) ①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정보는 보관형태에 따라 시스템정보와 보관정보로 구분한다.

1. 시스템정보 : 시스템에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보관 정보 : 저장매체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의 종류별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정보 : 통상 6개월 내지 1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2. 보관 정보 : 통상 3년치 정보를 저장매체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제36조(정보의 공개 및 제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원별 등록설비용량 통계정보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폐기관련 통계정보
3. 월별 거래체결량 및 평균거래가격 등 거래시장 통계정보(단, 2013년 2월까지의 정보에 한한다)

②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적용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등 경영,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2.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계획, 휴전계획 등 설비운영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3. 발전기 특성자료 등 개별 전력설비에 관한 기술데이터, 기술자료 등 공개할 경우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4.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중 개별 발전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설비 등에 관한 정보
5.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7조(정보에 대한 권리)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귀속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38조(운영위원회) ①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와 기술의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한 제도운영위원회와 기술적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한 기술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력거래소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기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련 전문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임직원중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실무부서장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도운영위원회) ①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 및 의결한다.

1. 기준변경(제재기준)

2. 의무공급량 산정에 대한 이의 처리
3. 의무이행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처리
4. 이월신청의 타당성 검토
5. 국가소유 공급인증서관련 사항
6. 정보공개기준에 대한 심의
7.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기술운영위원회) ① 기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별로 각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 및 의결한다.

1. 설비확인 기준 변경 및 보완
2. 설비확인 신청내용에 대한 기준 적용
3. 공급인증서 발급제재에 대한 이의처리
4.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

제41조(관리시스템의 설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시스템의 기능)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관리시스템 이용자 등록 승인
2. 대상설비 내역 관리
3.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량 취득 및 확인
4. 공급인증서 발급·폐기
5. GIS기반 설비정보화 내역 관리
6. 공급인증서 보유 현황 관리
7. 공급인증서 제출 및 의무이행 검증

8. 기타 공급인증서 관리에 요구되는 업무 등

제43조(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관리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단,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4조(관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 : 시스템별 점검, 통신상태 점검
2. 매월 : 월간 예방점검 및 설비점검(UPS, 전원 등)
3. 분기 : 시스템 안전점검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개발 등 적극적인 시스템 보강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별도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의 하위 조항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제3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의 하위 조항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설비 가중치 적용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받는 태양광설비중 건축물이용 설비에 대한 가중치 적용 기준은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12년 6월30일까지 제9조에 의한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제4항제3호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서 태양광설비의 인버터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동 개정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력설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전력공급량에 대하여도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2011년도 하반기에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

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서 풍력설비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제13조 관련) <개정 2013.3.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설비(부대시설 포함)중 전력계통에 연계한 설비로서 다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상설비로 정의한다. 단,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별표 3에 따른다.

동일 발전소내 설비에 대해 복수의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 개별 가중치 적용대상 설비에 대한 가중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태양전지모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별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복수의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이 혼재되어 설치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공급인증서
가중치</th><th colspan="3">대상에너지 및 기준</th></tr>
<tr><th>설치유형</th><th>지목유형</th><th>용량기준</th></tr>
<tr><td rowspan="4">태양광
에너지</td><td>0.7</td><td rowspan="3">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td><td colspan="2">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td></tr>
<tr><td>1.0</td><td rowspan="2">기타 23개
지목</td><td>30kW 초과</td></tr>
<tr><td>1.2</td><td>30kW 이하</td></tr>
<tr><td>1.5</td><td colspan="3">①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②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이라 한다)</td></tr>
</table>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완료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관계 법령 및 별도 인·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상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등 건축물 관련 법규 및 하위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추적식 태양광발전인 경우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건축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경우(단, 건축물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붕’은 지붕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외벽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을 만족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태양전지 모듈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의 2배 면적 내에서만 인정하며 전체 발전설비 설치면적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이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와 별도로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부속시설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하며, ‘이용’이란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상부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존 시설물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을 제외한다)·철도·항만·공항·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 한한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아래의 (2-1) 부설주차장 및 (2-2) 자전거이용시설은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는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인정은 2년 주기로 국내외 태양광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의 50%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지자체장이 승인한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상시 무료개방한 면적에 한함(유무료 주차장 혼재시 입출구가 각각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면적 불인정)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2-2)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을 적용받는 자전거이용시설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여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자전거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설비용량의 50%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② 전체(발전사업허가 기준) 사업부지의 10%이내 면적에 한함

③ 지붕이 있는 구조물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된 용량에 한함

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은 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②「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로서 다음의 각 호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발전소 설치 부지는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 하천 또는 유지(단,「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제외)이어야 하며, 연중 유수가 있거나 상시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단, 인버터 및 배전선로는 제외)는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부력체의 옆면 또는 하부에 고정된 지지대가 없어야 한다.

다.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는 기존 댐 및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저수지의 주용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부력 자재 등에 대해서는「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기 타

지침 별표 3의 비고 3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의 내용 중 '전원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양수발전 사업구역에 한한다. ②의 내용 중 '폐광부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완료를 확인한 면적에 한하며, ③의 내용 중 '채석단지'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면적에 한한다.

2 바이오에너지 설비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 기준 및 범위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을 따른다.
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의 열량 비율만 적용하며, 바이오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목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제외 대상을 재검토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바이오에너지	0.5	매립지가스
	1.0	바이오에너지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매립지가스'란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가스를 말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란 광합성을 통해 자라는 모든 식물군으로부터 얻어지는 목질계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풍력 설비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 부 기 준
풍력	1.0	육상풍력
	1.5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해상풍력’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거리’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4 수력 설비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양수발전 설비는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수력	1.0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될 수 없음 * 공급의무자 자체 이행분으로 활용가능

5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연료전지	2.0	바이오가스 이용과 기타연료 이용에 동일한 공급인증서 발급함

6 IGCC 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 따른 석탄을 가스화한 에너지 중 발전용 에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IGCC	0.25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7 조력 설비

해양의 조석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설비에 한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 기준
조력	1.0	기존 방조제가 있는 경우
	2.0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8 폐기물에너지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 기준 및 범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을 따른다. 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열량 비율만 적용하며, 폐기물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폐기물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폐기물 에너지	0.25	부생가스
	0.5	폐기물
	1.0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하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RDF 전소발전’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시킨 고형연료(RDF)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한다.

RDF 및 폐기물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폐기물 가스화 발전’이란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합성가스(Syngas)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열분해에 의한 가스화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⑨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한다.

복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에너지원 가중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2] 소내소비전력 차감량 산정방식과 차감율 (제20조 관련)

1. 소내소비전력 차감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 태양광 별도인입의 경우(한전고객번호 존재) : 총 수전전력량 × 발전시간율 (50%)
   나. 기타의 경우 : 당월 발전량 × 소내소비전력 차감율
   * '차감율'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기술운영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다.

2.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은 다음과 같다.

전 원		적용설비용량기준		차감율(%)
풍력		10kW이상		0.8
수력		5MW이하		0.5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MW이하		0.3
바이오에너지	LFG	50MW이하		6.0
	바이오가스	50MW이하		7.0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1.0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0
			기타연료 이용	0.2
태양광		200kW 이하		0.5
		200kW 초과		1.0

[별표 3] 제주지역 상한가격 산정 기준 (제27조 관련)

제27조제3항에 의한 제주지역 상한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 식 : $REC_{제주}^{n} = REC_{육지}^{n} - [(SMP_{제주}^{n-1} - SMP_{육지}^{n-1}) \times 0.9]$

주1) $REC_{제주}^{n}$: 당해연도 제주도 REC 상한가격(천원/REC)

주2) $REC_{육지}^{n}$: 당해연도 육지 REC 상한가격(천원/REC)

주3) $SMP_{제주}^{n-1}$: 전년도 제주도 계통한계가격 연평균(원/kWh)

주4) $SMP_{육지}^{n-1}$: 전년도 육지 계통한계가격 연평균(원/kWh)

[별표 4]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28조 관련)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판매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70
사업내역서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관리시스템 등록 신청서	□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시).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최근 3개년)

1. 연도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최근 3개년)

기준년도 : ○○○○년
구　　분 : 공급의무자명　　(단위 : kW, MWh)

발 전 원	발전소명	용 량	발전량	비 고
소　　계				
합　　계				

2. 제출 자료 개요

통계작성 기준일	
통계확정여부	□ 확정통계　□ 잠정통계 (통계확정예정일 :　　)

<작성요령>
1. 직전 3개년도의 공급의무자별 전력공급량을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2. "발전원"은 화력/원자력/양수/부생가스/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세부에너지원까지 기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합니다.
4. 바이오 및 폐기물혼소발전소의 경우 "비고"란에 혼소비율을 기재합니다(예: 3% 바이오 혼소발전의 경우 '바이오 혼소(3%)'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상호(법인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대 표 자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14">발전소현황</td><td colspan="2">발 전 소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전력판매처</td><td colspan="4">☐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td></tr>
<tr><td rowspan="2">용량(kW)</td><td>허가</td><td colspan="2"></td><td rowspan="2">면 적(㎡)</td><td rowspan="2"></td></tr>
<tr><td>설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발전사업허가번호</td><td colspan="2" rowspan="2"></td><td>계약번호(발전기코드)</td><td></td></tr>
<tr><td>상업운전개시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td><td colspan="2"></td><td>사용전검사일</td><td></td></tr>
<tr><td colspan="2">계 통 구 분</td><td colspan="4">☐ 1인입, ☐ 별도인입(고객번호: ☐☐☐☐☐☐☐☐☐☐), ☐ 기타</td></tr>
<tr><td colspan="2">담 당 자 명</td><td colspan="2"></td><td>부서 / 직책</td><td></td></tr>
<tr><td colspan="2">연 락 처</td><td colspan="2"></td><td>이 메 일</td><td></td></tr>
<tr><td rowspan="5">발전방식</td><td rowspan="2">태양광</td><td>건축물 등 활용</td><td colspan="3">☐ 건 축 물 ☐ 기존 시설물</td></tr>
<tr><td>건축물 등 미활용</td><td colspan="2">☐ 5개 지목
☐ 기타 23개 지목</td><td></td></tr>
<tr><td>풍 력</td><td colspan="4">☐ 육상풍력 ☐ 해상풍력 - 연계거리 : ( ) km</td></tr>
<tr><td>바이오 폐기물</td><td colspan="4">☐ 바이오 폐기물 ☐ 폐기물 가스화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매립지 가스 ☐ RDF 전소발전</td></tr>
<tr><td>수력/조력</td><td colspan="4">☐ 수력 ☐ 조력 - 기존방조제 ○ 有 ○ 無</td></tr>
<tr><td colspan="2">기 타</td><td colspan="4">☐ 연료전지 ☐ IGCC ☐ 부생가스 ☐ 신·재생인증건축물</td></tr>
<tr><td rowspan="3">재원</td><td colspan="2" rowspan="3">총투자비</td><td rowspan="3">백만원</td><td>자체조달 등 (일반융자,PF포함)</td><td>백만원</td></tr>
<tr><td>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td><td>백만원</td></tr>
<tr><td>무상보조금 (국가/지자체)</td><td>백만원</td></tr>
</table>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설비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 1부씩 편철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함

□ 시공업체 (계약금액순 상위1개만 기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부서		담당자직위	

□ 소요자금 내역

구 분				수량	금액(천원)
순공사비	직접비	기자재비	주기기1 주기기2 주기기3 보조기기1 보조기기2		
		시공비	기계공사비 계전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부대공사비		
	간접비	설계용역비 용 지 비 외자조작비 사업주 제경비			
건 설 이 자					
합 계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함

□ 주요 설비 개요 (해당 에너지원에 한하여 작성)

1. 태양광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설치형태	□ 고정형			□ 추적형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회사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회사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기관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기관			
총 설치용량	모듈(kW)		인버터(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2. 풍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발전기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발전형태	□ 동기형 □ 유도형 □ 직류			
	인버터유무	□ 사용 □ 미사용			
	Back Up 장치 유무	□ 사용 □ 미사용 □ 배터리용량 (Ah)			
	정격출력	( ) Kw × ( ) 대			
	정격전압	□ 직류 □ 교류 (V)			
	성능평가기관				
터빈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터빈종류	□ 수평축 □ 수직축 □ 복합형			
	기어박스 유무	□ 기어식 □ 비기어식			
	블레이드 제어박스	□ 유압식 □ 전기식 □ 없음			
	블레이드 재질/개수/길이(m)	재질( ) / 개수( ) / 길이( ) m			
	풍향 추적 방식	□ 전기동작형 □ 바람동작형 □ 기타			
	Orientation	□ 전향식 □ 후향식 □ 복합식			
	풍속	시동( )m/s, 정격( )m/s, 종단( )m/s			
	로터 스피드 / 직경	( ) RPM / ( ) m			
	로터스피드 제어장치	□ 고정 □ 전대역변속 □ 부분변속			
	성능평가기관				
인버터 컨버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용량(kW)	
	출력측 정격전압(V)	
	인버터 효율(%)	
	성능평가기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 총용량 : ( )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타워형식	□ 원통형 □ 격자형 □ 기타	
HUB높이/설비용량	(m) / (kW)	

3. 바이오에너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전처리 설비	저류조	용량 / 수량	( ) ㎥ / ( ) set
	반응조(응집조)	용량 / 수량	( ) ㎥ / ( ) set
	고액분리기	용량 / 수량	( ) ㎥/h / ( ) set
소화 설비	가온장치	용량 / 수량	( ) ㎥ / ( ) set
	소화조	용량 / 수량	( ) ㎥ / ( ) set
	침전조	형식 / 규격	□ 원형 □ 사각형 / ( ) ϕ×H, W×L×H
	악취저감시설	방식 / 수량	( ) / ( ) set
가스 시설	탈황기	탈류제량 / 수량	( ) kg / ( ) set
	저장탱크	형식 / 용량 / 가스압력	□ 습식 □ 건식 / ( )㎥ / ( )mmAq
	안전장치	안전밸브(역화방지, 출방지시설)	□ 설치 □ 미설치
		고·저레벨 경보용리미트	□ 설치 □ 미설치
열원 시설	열원기기 (보일러)	보일러형식	□ 관류형 □ 수관식 □ 주철제 □ 노통연관식 □ 입형 □ 온수
		보일러용량	( ) t/h, 온수일 경우 : ( ) MW
	버너	버너종류(형식)	
		버너용량	( ) MW
발전 시설	동력원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동력원종류	□ 가스터빈 □ 전소형가스엔진 □ 혼소형가스엔진 (대체율 : ( ) %)
		발전용량	( ) kW
		발전방식	□ 동기형 □ 유도형
시설물 설치장소		□ 공공처리장 □ 회사 □ 기타	
소화조 처리방법		□ 단상 □ 이상 □ 기타	
유입액 고·액분리기		□ 설치 □ 미설치	
소화조설치		□ 실내 □ 실외	

4. 폐기물에너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소각로 사양	제조국/제조사	
	소각용량	ton/hr
	크기	L×W×H
F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마력	kW
	정압	mmAq
	풍량	㎥/min
I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마력	kW
	정압	mmAq
	풍량	㎥/min
보조 버너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형식/연료	
	용량	kcal/h
대상 폐기물	종류	□ 폐가스 □ 산업폐기물 □ 폐목재 □ 생활폐기물 □ 고형연료(RDF/RPF) □ 기타
	폐기물규격 (투입시점)	□ 성형 □ 미성형 * 모양 : ( ) / 크기 : ( ) mm
운전 방식	가동방식	□ 회분식 □ 준연속식 □ 연속식
	투입방식	□ 자동연속투입 □ 간헐투입 □ 일괄투입
	연소방식	□ 이동화격자 □ 고정화격자 □ 유동상 □ 로타리킬른 □ 로타리킬른+이동화격자 □ 분무식
에너지 회수	시설형태	□ 스팀 □ 온수 □ 온풍 □ 발전 □ 복합
	열원설비	- 보일러용량 : ( ) ton/h * MW(온수)단위는 ton/h(증기)로 환산할 것. 1ton/h=0.6978MW
	발전설비	- 발전방식 : ( ) - 용량 : ( ) kW
	생산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열 : ( ) kcal/h - 압력 : ( ) atm - 전기 : ( ) kWh
	공급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열 : ( ) kcal/h - 압력 : ( ) atm - 전기 : ( ) kWh
	사용방법	□ 생산공정 □ 냉방 □ 난방 □ 전기 □ 기타
에너지사용량 및 회수량		- 폐기물 사용량 : ton/d - 연 가동 일수 : 일 - 에너지 회수량 : kcal/y

5. 수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 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설치형태	□ 댐식 □ 수로식 □ 터널식 □ 기타					
취수보	□ 콘크리트중력식 □ 중력식+가동보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6. 조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발전방식	□ 단류식(창조식) □ 단류식(낙조식) □ 복류식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7. 연료전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위 치	□옥내 □옥외 □기타 ( )
시스템 형식(사양)	□PEMFC □PAFC □MCFC □기타 ( )
총 설치용량(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8. 부생가스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구 분	□ 기력(전기) □ 복합(전기) □ 열병합(전기+열)			
보일러	형식	□ 보일러 □ 배열회수보일러		
	제소사/제조국		생산연도	
	효율	( ) %	연료	
	모델명		압력(㎏/㎠)	
	증기온도(℃)		증발량(t/h)	
터빈	형식	□ 가스터빈 □ 증기터빈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회전수(rpm)	
발전기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전압(kV)	
	용량(MVA)			
송전설비	전압(kV)		선로규격	
	회선수			

9. IGCC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공기 분리 설비		산소 및 질소 공급 방법	□ 자체생산 □ 외부공급	
		분리 방법	□ 심랭법 □ PSA법 □ 막분리법	
		1일 생산 용량	산소 ( ) 톤 / 질소 ( ) 톤	
가스화 설비	연료공급 설비	연료 종류	□ 석탄 □ 잔사유 □ 석탄+잔사유 □ 기타	
		공급 방식	□ 건식 □ 습식	
		연료공급 용량	( ) 톤/일	
	가스화기	가스화기 공정사/수량	( ) / ( ) set	
		형식	□ 분류층 □ 유동층 □ 고정층	
		합성가스 생산 열량	( ) Gcal/h (HHV 기준)	
가스 정제 설비	집진설비	집진 방법	□ Cyclone □ Ceramic Filter □ Metal Filter □ Wet Scrubber □ 기타 ( )	
	산성가스 제거 설비	공정 기술명	□ 건식공정 ( ) □ 습식공정 ( ) □ 기타 ( )	
발전 설비	가스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 ) / ( ) set	
		정격출력	( ) MW (ISO조건)	
	스팀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 ) / ( ) set	
		정격출력	( ) MW	
	발전기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HRSG	형식/수량	□ 조연 □ 비조연 □ 2압식 □ 3압식	( ) set
	발전량	총 발전량/순 발전량	( ) MW / ( ) MW	
	발전효율	Gross/Net (HHV)	( ) % / ( ) %	

※ 첨부서류(서류를 각 1부씩 편철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함)

1.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2부.
③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2부.
④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2부.
⑤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근접촬영 포함하여 5종 이상) 2부.
⑥ 단선결선도 2부.
⑦ 정보제공동의서(제공서식 이용) 2부.
⑧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2부.
⑨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2부.

2. 에너지원별 제출서류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①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2부. - 인버터는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설치도면 2부. ③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2부. - 건축물 등 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④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2부. -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 표기되어야 함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2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2부. - 해상풍력의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하 법률」에 따른 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2부(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바이오 폐기물	① 운전계획서 2부.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2부. ③ 모니터링 계획서(모니터링 설비 등) 2부. ④ 신·재생연료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부. ⑤ 연료원 출처, 종류, 조달계획(연료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2부.
수력/조력 연료전지	① 발전설비 사양서 2부. ② 설치도면 2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2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 타	① 신·재생에너지건물인증서 사본 2부. ② 계량시스템 관련 자료(계량기기 및 방법, 기록관리방법 등) 2부. - 자가용 발전설비에 한함

3. 기타 제출서류(해당사항 관련서류 제출)

① 특수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2부.
②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2부.
③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2부.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5">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td><td>관리번호</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법인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대 표 자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8">발전소현황</td><td>발 전 소 명</td><td colspan="4"></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전력판매처</td><td colspan="4">□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td></tr>
<tr><td>용 량(kW)</td><td colspan="2"></td><td>면 적(㎡)</td><td></td></tr>
<tr><td>발전사업허가번호</td><td colspan="2"></td><td>계약번호(발전기코드)</td><td></td></tr>
<tr><td>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td><td colspan="2"></td><td>사용전검사일</td><td></td></tr>
<tr><td>에 너 지 원</td><td colspan="4"></td></tr>
<tr><td>가 중 치</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용 량(kW)		면 적(㎡)	

변경신청사항	선택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발전소명		
	□	대 표 자		
	□	설비용량		
	□	가 중 치		
	□	전력판매처		
	□	기타( )		
	참고사항			
	변 경 일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신청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서류(서류를 각 1부씩 편철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발전사업(변경)허가증 사본 2부.
- 사용전검사확인증(변경의 경우)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전력판매계약서 사본 2부.
- 기타 관련서류 2부.

[별지 제6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설비 등록말소 신고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용 량(kW)			
	관 리 번 호			
폐기사유				
폐기(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의 등록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용 량(kW)		면 적(㎡)	
	담 당 자 명		부 서 /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설비확인	관 리 번 호			
	에 너 지 원			
	가 중 치			
신청	신청대상기간 (전력공급기간)	년 월 ~ 년 월		
	전력공급량 (당해신청대상)	MWh	(이전)이월분	MWh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예정)량	REC	차기이월분 (미발행잔여분)	MWh
			발급수수료	원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산출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서가 접수 처리됩니다.
2. 전력공급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합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후 소수점이하분은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용 량(kW)		면 적(㎡)	
	담 당 자 명		부 서 /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설비현황	관 리 번 호			
	에 너 지 원			
	가 중 치			
신청	신청대상기간 (전력공급기간)	년 월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예정)량	REC	발급수수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 참고사항: 1. 산출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2. 공급인증서 발급후 소수점이하분은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고서

설비확인서 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			
발전내역	발전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전량(kWh)	*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		

상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위와 같이 전력생산이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번호 : 제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 상호(법인명) :
2. 주소 :
3. 대표자명 :
4. 발전소명 :
5. 설비내용
   - 설비관리번호 :
   - 에너지원 :
   - 가중치 :
6. 인증내용
   - 전력공급기간 :
   - 인증서량 : REC (RPA 태양광 발전설비인 경우 : kWh)
   - 인증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공급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 현소유자 : (소유권 이전일 :)

[별지 제1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발전사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기명)	소재지	계약번호 (발전기코드)	용량 (kW)	공급량 (kWh)	공급월 (yyyymm)

<작성요령>

1.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에 대해 작성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소명/계약번호를 입력하고,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발전기명/발전기코드를 적습니다.
3. 공급량은 발전소 내 소비전력량을 제외한 전력공급량을 적습니다.
4. 공급량은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번째 자리까지 적습니다.
5. 공급월은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형태로 적습니다.
   (예: 공급월이 2012년 1월인 경우 201201로 작성)

[별지 제12호서식]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서

의뢰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의뢰용량(kW)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와 판매가격으로 상업운전개시일(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여내용	발전설비 용량	kW		
	공급인증서 판매가격	원/REC	※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대상설비에서 공급된 전력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함	
	발전소 입지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개 지목(가중치: 0.7) □ 기타 23개 지목(30kW 초과) (가중치: 1.0) □ 기타 23개 지목(30kW 이하) (가중치: 1.2) ※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며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은 예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선정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선정참여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구비서류 각 1부.

[별지 제14호서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table>
<tr><td rowspan="9">계
약
자</td><td rowspan="3">발
주
자</td><td colspan="2">상 호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대 표 자</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계
약
상
대
자</td><td colspan="2">발 전 소 명</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대 표 자</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설
비
현
황</td><td>에 너 지 원</td><td></td><td>설 비 용 량</td><td>kW</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가 중 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계
약
내
용</td><td colspan="2">계약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계약단가</td><td colspan="3">원/REC</td></tr>
<tr><td colspan="2">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td><td colspan="3">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td></tr>
<tr><td colspan="3">계약 보증금</td><td colspan="3">금 원정 (₩)
(종류 : , 면제사유 :)</td></tr>
</table>

발주자(구매자)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의무이행실적 통보 양식

1. 공급의무자(사업자) 개요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명		부 서 /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2. 의무공급량 및 이행연기 신청내용

기준년도: ○○○○년 (단위 : REC)

구 분	총 의무공급량	별도 의무공급량
전년도 이행연기량 (A)		
당해연도 총 의무공급량 (B)		
실제 총 의무공급량 (C=A+B)		
이행량 (D)		
이행연기량 (E)		
미이행량 (F=C-D-E)		

2-1. 의무이행 세부내역(D)

(단위 : REC, 백만원)

구 분	태양광		비태양광						합 계	
			○○○		○○○		○○○			
	이행량	소요비용	이행량	소요비용	이행량	소요비용	이행량	소요비용	이행량	소요비용
자체건설										
외부조달										
합 계										

※ 태양광의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른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2-2. 이행연기 세부내역(E)

(단위 : REC)

구 분	총 의무공급량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연기량		
이행연기 사유		
향후 이행실행계획		

2-3. 미이행 세부내역(F)

(단위 : REC)

구 분	총 의무공급량	별도 의무공급량
미이행량		
미이행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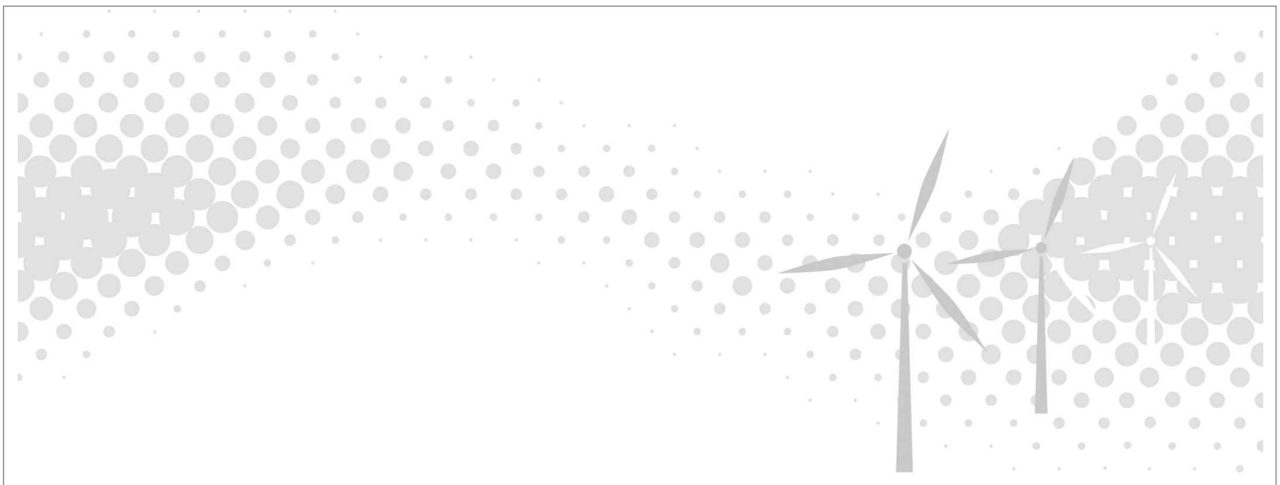

Ⅸ. 부 록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 221
2.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참여절차 / 223
3.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 224
4. RPS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225
5. 지목의 종류 / 229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관련기관
1단계	발전 사업 허가 신청	1.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2.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송전관계 열람도 ③ 발전원가 명세서 및 기술 인력 확보 계획서 (200kW이하는 생략) ④ 사업 개시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사업 손익 산출서 ⑤ 발전 설비 개요서 ⑥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⑦ 정관·등기부등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법인인 경우, 설립 중인 법인은 그 정관)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 이하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의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시·도	
	도 : 허가기준 검토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송전계통검토	결격사유조회	
	▼				
	최종 검토				
	▼				
2단계	환경 영향 평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가 대상에 따라 다름			기초지방 자치단체장
	▼				
	개발행위 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병행			
	▼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				
3단계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4단계	사업 개시 신고	사업 개시 신고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				
	대상 설비 확인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공급인증기관 (신재생센터)

참 고

지자체별 발전사업허가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부 서		전 화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전력관리팀	02-2133-3712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051-888-3151
대구광역시		기계자동차과	신재생에너지담당	053-803-4943
인천광역시		녹색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담당	032-440-4343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	기술사업화담당	062-613-3741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	042-270-3641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	052-229-283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044-300-4022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031-8008-4822
강원도		에너지자원과	자원관리담당	033-249-3233
충청북도	일반	미래산업과	자원관리팀	043-220-3432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	-	043-220-6694
	북부출장소	산업자원과	-	043-220-6622
충청남도		전략산업과	성장동력담당	042-220-3234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063-280-3234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실	태양광담당	061-286-7233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	발전사업허가담당	053-950-2186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055-211-2894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064-710-2568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 허가	○ 3M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MW 이하 : 지자체
⬇	
발전소 건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상업발전소 건설 * 정부·지자체의 무상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비율에 대해 정부·지자체에 공급인증서 발급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시장 /전력수급 계약체결	○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	
전력공급	○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로 발전전력 공급
⬇	
사업개시	○ 사업개시 신고 수리 알림
⬇	
설비확인	○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접수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 설비용량 100kW 이상일 경우 발급수수료 납부
⬇	
거래시장 등록	○ 공급인증서 판매자는 거래시장에 공급인증서 등록
⬇	
공급인증서 매매	○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이행 신고	○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의무 이행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와 설비 확인이 거의 동시시점에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발전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의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확인을 받아야 공급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대상설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에 의한 설비확인이 완료된 이후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설비확인 진행과정은 RPS 관리시스템(rps.kemco.or.kr)에서 확인 가능

⬇

공급인증서 발급량 확인 (발급량확인)

○ 전력판매처(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공단으로 전송되어 시스템에 업로드된 해당 발전소의 발전량 및 소내소비량 확인

○ 발전량 및 소내소비량은 당월 데이터가 익월 25일 이후 시스템 반영
(예) 2012년 3월 발전량은 2012년 4월 25일 이후 시스템 업로드

⬇

공급인증서 연료량 확인 (연료량확인)

○ 에너지원이 바이오·폐기물인 경우에만 해당

○ 매월 발전량에 대해 사용한 발전연료의 연료량을 입력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발급처리)

○ 발전량 및 연료량이 확인되면 "가발급" 상태

○ "가발급" 상태에서 설비정보 및 발급정보를 최종 확인 후 발급 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및 확인 (발급처리)

○ 설비정보 및 발급정보를 확인 후 발급신청을 하면 "결제대기" 상태
① 100kW 미만 설비 :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
② 100kW 이상 설비 : 발급 수수료 정보를 검토 후 공단 계좌에 수수료 (VAT포함) 입금 후 발급 수수료 입금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처리)

○ KEMCO에서 발급수수료 입금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

4. RPS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공급인증서 발급 – 전체 절차

설비확인 및 등록	설비확인 완료되면 설비코드 부여 RPS 시스템에 설비 (자동) 등록
발급량 확인	전력판매처는 발전량 정보를 공단에 제공(매월 25일 이후) 사업자는 전력량과 소내소비량 확인
연료량 제출*	바이오/폐기물 발전설비 : 연료량 정보 제출(온라인) 타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은 해당사항 없음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 지정계좌로 수수료납부 및 확인요청(용량 100kW이상 설비)
수수료 납부 확인	수수료 입금 여부 확인 (용량 100kW이상 설비)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용량 100kW미만 설비)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처리 공급인증서 보유현황에서 전체 현황 확인

1

공급인증서 발급 – 1단계 (등록 설비 내역 확인)

2

공급인증서 발급 – 2단계 (발급량 확인)

한전/전력거래소으로부터 전력량 정보가
취득되면 발전량 확인에 초기 목록 조회 가능

발전량 및 소내소비량이 맞을 경우 "확인" 버튼 클릭
(소내소비량 확인 버튼의 경우 좌우 스크롤로 이동해야 보임)

<발전량 산정 기준>
1)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 : 상업운전일부터 발전량 인정
2)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설비확인 미신청 : 설비확인서 발급일부터 발전량 인정

3

공급인증서 발급 – 3단계 (연료량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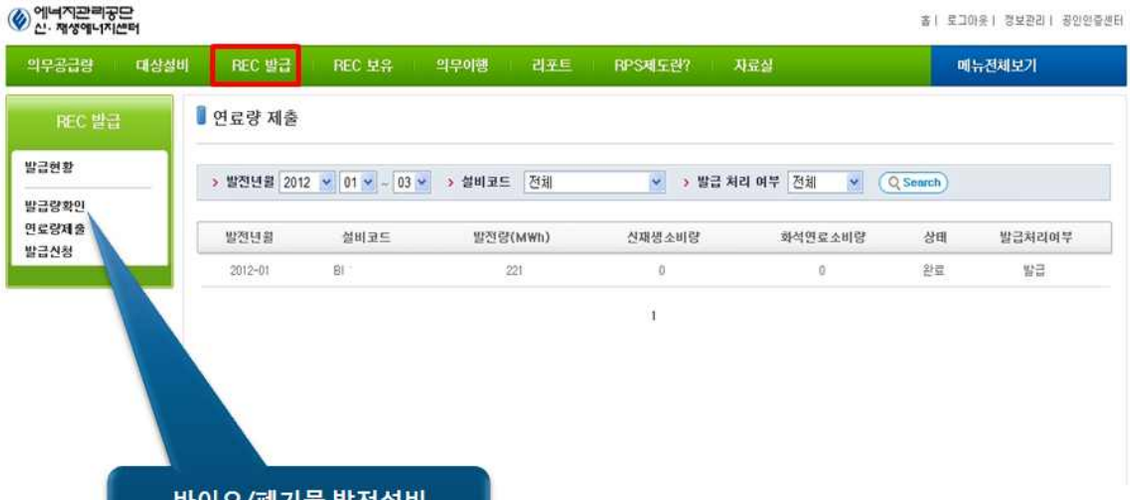

바이오/폐기물 발전설비
사용연료량 정보 입력

* 타 에너지원(태양광, 수력 등) 의 경우, 연료량 제출 절차 해당사항 없음

4

공급인증서 발급 – 4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발급량 확인이 완료된 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가능

① 가발급 - 발급량(총 전력량-소내소비량) 확인 완료 상태
> 발전소 정보 클릭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② 결제대기 - 수수료 입금(면제대상 확인)이 필요한 단계
1) 수수료 입금 대상(100kW 이상) : 송금 후 '발급 수수료 입금확인' 클릭
2) 수수료 면제 대상(100kW 미만) :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클릭
③ 발급수수료입금확인(발급수수료면제대상)
> 공단의 확인 대기 상태, 공단의 확인 완료 후 최종 발급

5

공급인증서 발급 – 4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세부 내용)

① '가발급' 단계에서 [발급신청] 클릭

② '결제대기' 단계
1) 수수료 입금 대상 : 입금 후 [발급수수료 입금확인] 클릭
2) 수수료 면제 대상 :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클릭

- 수수료입금계좌
기업은행, 481-018604-04-514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 REC발급수수료에 기재된 금액 입금 (VAT 기 포함)
입금자명 : '관리번호(4자리)+발전소명'
※ 관리번호 : 한전 계약번호(숫자4자리)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기코드(숫자4자리)

6

공급인증서 발급 – 5단계 (공급인증서 발급)

7

5. 지목의 종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른 지목의 구분

5개 지목(가중치 : 0.7)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23개 지목		용량 30kW 초과(가중치 : 1.0) 용량 30kW 이하(가중치 : 1.2)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참 고

지목의 구분

5대 지목	구 분(가중치 : 0.7)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23개 지목	구 분	용량 30kW 초과(가중치 : 1.0)
		용량 30kW 이하(가중치 : 1.2)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23개 지목	구 분	용량 30kW 초과(가중치 : 1.0)
		용량 30kW 이하(가중치 :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 · 자연유수(自然流水)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23개 지목	구 분	용량 30kW 초과(가중치 : 1.0)
		용량 30kW 이하(가중치 : 1.2)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소유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3개 지목	구 분	용량 30kW 초과(가중치 : 1.0)
		용량 30kW 이하(가중치 : 1.2)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발행일 : 2013년 5월
▌발행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2동 1157) RPS사업실
http://www.energy.or.kr
전화 : 031)260-4846(~4865)